

국내 역사공원의 지정 및 조성 경향 분석†

길지혜* · 박희성** · 박재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한경대학교 건설공학연구소

Analysis on Trends in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Historical Parks in Korea

Gil, Ji-Hye* · Park, Hee-Soung** · Park, Jae-M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eoul Studies, University of Seoul

***Construction Engineering Research Laboratory, Han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fter the revision of the Urban Park Act in 2005, historical parks emerged in Korea to promote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heritage while also offering recreation and education to ordinary citizens. It is now tim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historical parks by examining their current operational conditions, and seek appropriate institutional improvements. By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parks in various countries, as well as the trends in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domestic historical park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function and role of historical parks, and seeks a direction for future action. Through its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historical parks through cooperation with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despite historical resources being concentrated in sites dating to the Joseon Dynasty, they also include heritage pertaining to persons, events, and places. There is also a trend toward increasing the focus on modern heritage. Historical parks show differences across existing cities and new towns, as well as between major cities and provincial cities. Provincial cities showed a recent trend of using historical parks as important resources for strengthening their economics and solidifying their identities. Also,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designated category for a park is changed to a historical park. In such cases, there may be a problem where certain functions of the park run into conflict. Domestic historical parks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heritage parks, memorial parks, historical theme parks, and historic parks. Such detailed classification schemes may serve as the strategic foundation for later conservation and usage of historical heritage, as well as a standard for suggesting concrete direction in the operation of historical parks.

Key Words: Urban Park, Specific Park,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5322).

Corresponding author: Hee-Soung Park, Institute of Seoul Studies,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 +82-2-6490-5365, E-mail: janeha@naver.com

국문초록

2005년 도시공원법 개정 이후 국내에는 역사유산의 보전은 물론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사공원이 등장하였다. 이제는 역사공원의 운영 실태를 통해 국내 역사공원의 특성을 알고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때이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역사공원 제도의 특성과 국내 역사공원의 지정 및 조성 경향을 분석하여 역사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하되, 역사공원 현황과 조성 과정을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역사자원은 주로 조선시대 유적에 집중되어 있지만 인물, 사건, 장소 등의 유산도 포함되며 근대기 유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역사공원은 기존도시와 신도시, 대도시와 지방도시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지방도시는 최근 경제 활성화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역사공원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공원의 종류를 역사공원으로 변경한 경우, 기존 기능과 일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내 역사공원은 역사유산공원, 역사기념공원, 역사주제공원과 역사적공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부적 유형분류는 향후 역사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전략적 토대가 되며 역사공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주제어: 도시공원, 주제공원, 문화유산, 보전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도시공원에 역사공원이 등장한 것은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 시행되면서 부터다. 역사공원이 처음 지정된 것은 2007년으로, 전국에 모두 8개소가 지정되었고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4년에는 총 169개소가 된다. 면적은 2007년에는 452,435m²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7,698,726m²로 이는 처음보다 약 39배 늘어난 수치다¹⁾.

역사공원과 마찬가지로 문화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등 다른 주제공원 역시 법 개정 이후 개소수와 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약 13.6%의 비중을 차지한다²⁾. 이처럼 도시공원법 개편으로 등장한 주제공원은 지난 10년간 국내 도시공원의 다양화를 견인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주제공원이 도시에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도시 주제공원 가운데 역사공원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³⁾으로, 다른 주제공원과는 다르게 역사자원을 다뤄야 하는 특별한 상황을 가진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역사공원에서 답을 수 있는 역사자원은 어디까지 인가하는 점이다. 현재 역사공원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자원은 장소, 유적, 유물은 물론, 민속자료, 사적, 명승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들은 역사공원을 특화하고 다양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원 조성과 관리의 측면에서는 일관된 철학과 방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사공원 지정과 조성의 경향 분석은 역사공원을 유형화 하고 유형별 조성, 관리의 기준을 제안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된다.

다른 하나는 역사공원 내 문화재가 있을 경우 고려해야 할 보전(conservation)의 문제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는 공원 내 핵심이 되는 역사 소재를 보호하기 위해 보존과 보전, 복원의 수준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도록 하는데, 각 용어의 해석이 문화재청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역사공원 유산의 현 상태 유지와 보호, 급격한 변화와 훼손 방지를 염두에 두면서 서도 시대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유산은 의미와 형태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문화재청은 유산의 원형을 중시하고 유산의 동결보존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preservation)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처한 상황에 따라 보존, 복원, 개수, 보수 등 필요한 개입의 수준과 방식이 결정된다. 이때 유산에 가하는 제반의 조치는 오직 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유산의 가치는 고유한 것으로,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상실되거나 변질될 수 없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⁴⁾.

사실 유산에 대한 이 두 가지 시각은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차가 역사공원이라는 한 공간에 공존하는 경우, 조성이나 유지에 많은 마찰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역사공원 내 역사자원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는 것은 역사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는데 유효할 수 있다. 더불어 역사공원의 지정과 조성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의 도시공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양적 균형과

질적 관리를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공원의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국내 역사공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역사공원이 대응해야 할 이들 쟁점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동향

국내에서 역사공원에 관련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시도되었다. Ahn(2001)의 연구는 국내에 역사공원이 법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수행된 것으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역사공원의 개념과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역사공원의 개념 정립과 운영 방향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국내 역사공원의 적용 가능성을 선행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도시공원법 제정 이전의 상황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로, 오늘날 역사공원의 현황과 비교해서는 몇몇 검토할 부분을 남긴다.

Hong *et al.*(2007)은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공원 내 도입시설을 통해 도시공원의 정체성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역사공원이 여타 근린공원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통해 역사자원만 있다고 하여 역사공원으로 특화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지가 한정되어 있고 공원의 속성을 주로 시설물로 파악하고 있어서 역사공원과 역사자원, 역사성의 관계를 알기에는 제한된 부분이 있다.

도시공원법 개정 이후 역사공원의 관련 연구는 최근에 다시 활발하게 진행된다. Kim *et al.*(2015)은 서울시의 기 지정된 역사공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원과 주변 역사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공원 기능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Ko and So(2016)는 서울시 역사공원을 현황과 운영 관리 부분으로 심화 고찰하고 역사공원의 기능을 역사성, 심미성, 교육성, 사회성으로 보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두 연구는 모두 역사공원의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으며 역사공원 지정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역사공원 운영의 일부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

이처럼 역사공원과 관련한 연구는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연구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각 연구 결과를 국내 역사공원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성과는 역사공원이 처한 문제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역사공원의 개념을 고찰하여 역사공원의 유형을 살핀다. 역사공원은 이미 국제적으로 일반화 된 것으로, 국내 역사공원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역사공원 운영 방식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역사공원의 개념 고찰을 바탕으로 역사자원의 성격에 따른 공원의 유형을 도출하고 도시공원의 주제공원으로서 역사공원의 기능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국내 역사공원을 대상으로 제반의 조사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역사공원의 분포지, 면적, 역사자원의 종류, 문화재의 유무, 문화재 유형과 시기 등을 파악하고 공원시설의 종류를 조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밖에 지정 및 완공연도 등의 조성 과정을 살펴 경향 파악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내 역사공원은 모두 172개소이다. 이들 역사공원은 통계청 자료 “2014년도 도시계획현황: 공원(1)”에 조사된 169개소를 기준으로, 이후에 지정 취소되었거나 추가된 곳, 그리고 지적선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종 도출한 것이다⁵⁾.

공원의 세부 조사는 통계청 자료의 지역별 개소수에 기준하여 실시하고 지자체별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고시공고, 뉴스 기사,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로 현황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내 역사공원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황 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기, 지역, 면적, 자원별 분석을 통해 국내 역사공원의 지정 현황과 조성 경향을 파악하여 도시공원에서 역사공원이 점하는 위치를 알고 그 기능과 특징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 역사공원을 앞서 도출한 역사공원의 유형에 맞게 재분류하고 공원 운영에 필요한 방향을 고찰한다.

II. 역사공원의 개념과 유형

1. 주요 국가별 역사공원 운영과 특징

한국의 역사공원의 개념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시사점을 가진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은 19세기 국립공원시스템(National Park System)을 마련하여 최초로 역사자원을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역사공원 개념을 도입한 배경을 가진다. 영국은 근대공원의 발생지 이면서 공원과 그 전신인 정원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곳이다. 일본은 동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특수공원 내 역사공원을 법제화 하고 운영한 역사를 가진다.

이들 세 국가의 역사공원은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공원화하여 유산을 보전하면서도 방문객에게는 여가와 휴식, 교육의 기

능을 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역사공원 개념과 특성은 각국의 역사, 법체계, 행정 조직의 업무추진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정립하고 있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⁶⁾.

1) 미국

미국은 1872년부터 자연, 역사, 레크리에이션, 문화 등을 주제로 대규모 국립공원시스템을 운영한다. 미국의 국립공원시스템 구축의 기저에는 국가 자원을 정책적으로 보호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국가 자원의 보존(preservation)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된다⁷⁾. 역사공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06년 유적보호법(the Antiquities Act)의 지정으로 역사적(historic) 랜드마크나 구조물(structures),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대상(objects) 등의 국가 기념물 보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국립공원시스템에도 역사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후 1912년에 설치된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에서는 1933년부터 1964년까지 국가사적지 9개소와 비연방 소유의 국제공원 1개소를 포함한 75개 지역을 선정하여 국립공원시스템에 추가시킨다.

2009년을 기준으로 국립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한 공원 가운데 역사와 관련된 유형은 모두 123개소로 가장 비중이 높다(Table 1 참조). 이들은 역사와 관계있는 '역사공원(historical park)'과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사적지(historic site)'로 성격이 나뉜다. 여기에는, 공원은 근대 발명품(modern legal invention)이므로

Table 1. Classification of National Park System (NPS, 2009)

Categories	Number
National battlefield, national battlefield park, national military park, national battlefield site	24
National historical park, national historic site, international historic site	123
National lakeshore	4
National memorial	27
National monument	74
National park	58
National parkway	4
National preserve and national reserve	20
National recreation area	18
National river and 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 and river way	15
National scenic trail	3
National seashore	10
Other designations	11
Total	391

그 자체가 유적지처럼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historic)'이 될 수는 없어도 공원이 역사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역사와 관계있는(historical)' 것으로는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⁸⁾.

그밖에 전적지(battlefield), 기념·추모지(memorial), 기념물(monument) 등도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다양한 역사자원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2) 영국

영국은 입헌군주제도의 영향으로 미국과 제도 운영에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역사공원의 공식명칭은 역사적공원과 정원(Historic parks and gardens)으로, 1983년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에 근거하여 제시되었다. 영국 역사건축 기념물 위원회(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Commission for England)의 주도로 현재까지 약 1,600개 이상의 역사적인 공원과 정원이 보호 관리된다.

영국의 역사공원은 보전이 필요한 역사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역사유산은 주로 공원, 광장, 개인정원 및 묘지 등을 지칭한다. 영국의 역사유산은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영향을 받지만 주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등록과 민간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의 지원을 통해 보존된다.

영국은 역사공원의 대상을 공원이나 정원 등 자체가 역사성을 가진 유산으로 한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195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산업유산 보존 노력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은 곧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새로운 범주로 등장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영국의 역사공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산업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인정한 것처럼, 초기 근대기에 조성한 공원과 정원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려는 것이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1968년 신도시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가화 구역 및 시가화 조정 구역에 관한 도시계획과 개발허가제도가 마련되면서, 특수공원의 하나로서 역사공원이 등장하였다.

일본의 역사공원 도입 취지는 도시계획에서 역사자원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1969년 발족한 도시공원문제연구회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를 널리 일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라 정의하였다(Commission of Urban Park in Japan, 2005). 2006년 기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는 "역사공원은 유적, 정원, 건축물 등의 문화유산이 있는 토지 또는 그 복원, 전시 등에 적합한 토지 또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토지가 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는 "[역사공원은] 역사적 의의를 가

지는 토지를 포함한 토지구역으로...(중략)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토지가 유효하게 이용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06).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공원은 역사자원을 활용하거나 역사를 테마로 하여 도시민에게 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에는 사적과 명승, 국보, 보물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산의 복원과 주변 환경의 정비를 병행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공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개관하는데 이용하거나 관광의 거점으로 주요하게 활용된다. 2006년과 2007년 “도시공원법 시행 50주년 기념사업실행위원회”에서 선별한 「일본 역사공원 100선」이 지역 관광 홍보로 연결되고 있는 것⁹⁾은 바로 이러한 일본 역사공원의 기능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국내 역사공원의 개념과 유형 분류

1) 국내 역사공원의 개념

한국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역사공원 제도 도입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Kim(1988)과 Ahn(2001)은 미국 국립공원시스템과 일본 특수공원으로서 역사공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역사공원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역사공원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을 뿐, 당시에는 이미 사적지를 중심으로 역사공원으로 불리거나 역사공원의 성격에 준하는 공원이 다수 조성되고 있었다(Lee et al., 2004)¹⁰⁾.

도시공원법 제15조에 제시된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것은 법 제정 이전에 운영되고 있던 역사공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공원이 가지는 기능성과 상징성을 이용하는 역사공원의 성격은 전술한 일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역사유산의 유형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다양한 형태의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공통적이다.

Table 2. Definitions of historical and historic park

Categories	Contents
National park system, USA	An area of special scenic, historical, or scientific importance set aside and maintained by a national government and in the United States by an act of Congress
Historic park and garden, England	Parks that are for celebrating designed landscapes of note, and encouraging appropriate protection. The grounds of large stately homes to small domestic gardens, as well other designed landscapes such as town squares, public parks and cemeteries.
Historical park, Japan	Parks that are recovered or displayed through cultural assets such as heritage, historic gardens or buildings on there
Historical park, Korea	Parks that are built for the rest and education of urban residents in the practical use of any historical place, establishment, relics, or any vestiges, etc. of a city

이상, 국내 역사공원의 개념적 특징은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사공원의 성격을 정리한 Table 2의 내용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역사자원의 성격에 따른 공원의 유형분류

역사공원의 개념이 다양한 데에는 ‘역사’의 범주에서부터 ‘역사성’의 해석, ‘역사자원’의 범위 규정, 공원의 역할과 기능 등 많은 부분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역사공원 관리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사자원의 종류와 성격이다. 이것은 공원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유산 보존의 측면에서도 세분화된 실행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앞서 살펴본 국외 사례와 국내 역사공원을 종합하면, 역사공원은 역사자원의 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Table 3 참조). 문화재와 같이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유산이 있거나 역사자원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재건한 역사유산공원 (Heritage park), 유산, 인물, 사건 등을 포함한 역사자원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역사기념공원(Memorial park), 역사를 주

Table 3. Classification and contents of historical and historic park

Categories	Resource management	Contents
Historical park ¹¹⁾	Conservation	A park which is constructed for conserving(or protecting) heritage and scenic site
	Reconstruction or restoration	A park where heritage is restored by excavation investigation or historical records research
	Commemoration	A park designed for commemorating historical place, event or historical figure
	Re-creation	A park designed for entertainment with historical stories, person or heritage. Most of them are re-created for enjoyment or tourism.
Historic park	Conservation	A park(or garden) which is heritage itself. Some parks can have special historical stories, events or heritages

제로 새롭게 재창조한 역사테마공원(Historical theme park), 그리고 공원 자체가 역사성이 높은 역사적공원(Historic park)이 그것이다. 그리고 역사자원은 보호의 정도에 따라, 보전(conservation)과 복원/재건(restoration/reconstruction), 기념(commemoration), 재현(re-creation)으로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III. 결과 및 고찰

1. 국내 역사공원의 지정 현황

1) 시기별 추이

2005년부터 10년간 역사공원의 지정 개소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그 수가 증가하여 2009년에 가장 많은 역사공원을 지정하고 그 이후로는 감소하다가 2014년에 다시 지정 개소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 참조).

역사공원의 지정 과정은 새롭게 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와 다른 유형의 공원을 법제상 역사공원으로 변경한 경우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역사공원을 지정과 변경 개소수로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 새로운 개발지역에 신설되는 역사공원의 개소수를 함께 비교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지정과 변경 개소수의 시기별 변화를 검토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역사공원은 2007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해는 세종과 광고, 김해와 같은 개발지역에서 역사공원을 집중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주제로 역사공원을 신청하기 시작한 2008년을 국내 역사공원의 본격적인 증가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009년은 가장 많은 수의 역사공원을 지정한 해로, 여러 시/군에서 옛 수계, 성지, 묘역, 유적지, 서원, 매립지 등 다양한 주제로 새로운 공원을 신설한다. 이 시기에는 다른 유형의 도시공원이 역사공원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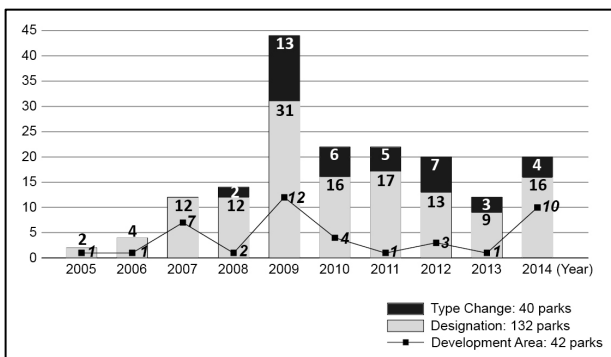


Figure 1. Annual designation changes of historical parks in Korea

2010년부터는 역사공원 지정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2014년에는 다시 지정수가 증가하는데, 이는 파주 운정지구와 운정3지구에 8개소의 역사공원을 지정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운 도시지역을 개발하면서 역사공원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전체적으로 역사공원을 신청하는 수는 감소세에 있다고 하겠다.

2) 지역별 분포

지역별 역사공원 지정현황을 보면, 단일 시 지역 중에는 서울과 대전, 세종이, 도 지역에서는 경기, 전남, 경남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Table 4 참조).

서울에는 15개소의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묘지공원의 기존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새롭게 재조성한 곳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의 관리를 받고 있는 사적지는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기존 모습 그대로 유지된 경우가 많다. 대전은 7개소의 역사공원 중 4개소가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한 곳이고 3개소는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정에서 지정했다.

Table 4. Regional distribution of historical parks in Korea

City/ province	No	Designation characteristics			Development condition		
		Old city (기존 도시)	New town (개발 지역)	Change of park type (공원 유형변경)	Deve- loped (조성)	Main- tained (유지)	Unde- veloped (미조성)
Seoul	15	4	2	9	6	5	4
Busan	2	1	0	1	1	0	1
Daegu	1	1	0	0	1	0	0
Incheon	4	1	1	2	1	0	3
Gwangju	6	3	0	3	2	3	1
Daejeon	7	0	3	4	2	2	3
Ulsan	6	4	2	0	3	0	3
Sejong	7	0	7	0	4	0	3
Gyeonggi	49	21	22	6	27	4	18
Gangwon	6	5	1	0	3	1	2
Chungbuk	6	5	0	1	5	1	0
Chungnam	9	7	1	1	5	2	2
Jeonbuk	6	3	1	2	2	2	2
Jeonnam	12	10	0	2	9	0	3
Gyeongbuk	9	8	0	1	5	0	4
Gyeongnam	26	16	2	8	13	6	7
Jeju	1	1	0	0	0	1	0
Total	172	90	42	40	89	27	56

* 'Developed' condition includes the phase of completion, partially development and under development.

** 'Maintained' condition means keeping the present condition of park without new construction development.

세종은 역사공원으로 7개소를 지정하였고 유적지나 묘역과 같은 도시개발 전의 역사자원을 대상으로 역사공원을 조성 중이다.

도별 단위로는 경기도가 49개소로 20개 시/군에서 역사공원을 지정했다. 그 중 파주 9개소, 구리 6개소, 남양주 5개소로 많은 편이다. 파주는 그 중 8개소의 역사공원이 모두 택지개발과정에서 지정된 곳이다. 구리도 3개소의 역사공원이 보금자리지구 개발과정에서 위치와 면적만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도 택지개발과정에서 2개소의 역사공원을 조성하였다. 경기도 역사공원의 지정 현황을 보면, 광고, 판교, 위례, 운정, 미사 등 개발지역에서 22개소의 역사공원을 지정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공원 유형을 변경한 곳은 적어 역사자원을 대상으로 많은 수의 역사공원을 신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남은 12개소의 역사공원을 지정하였는데 7개 시/군에서 신청했다. 경남은 26개소의 역사공원을 12개 시/군에서 지정하였다. 두 지역은 전남 10개소(83%), 경남 18개소(69%)의 역사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의 다양한 역사자원을 공원화하는데 활용하고자 했다.

지역별로 역사공원 지정 및 조성 경향을 종합해 보면, 서울, 광주, 대전, 진주, 김해 등 기존 도시에서는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되던 문화재가 입지한 공원을 법 개정 이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특징이 있었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역사공원을 신설하기보다는 다른 도시공원 유형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한 예가 많아 녹지의 확장보다는 기능의 재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종과 경기도는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과정에서 각각 7개소(100%), 43개소(88%)의 역사공원 신설계획을 수립, 조성하였다.

3) 면적별 성격

역사공원은 대부분 면적 1,500~10만m²의 범위에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한다. 면적은 지역이나 지정연도에 따라 뚜렷이 나타나는 차이는 없었다. 이중 신설되는 역사공원의 크기는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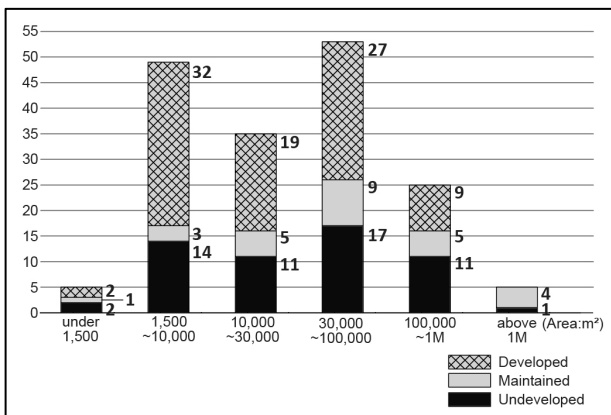


Figure 2. Areal distribution of historical parks in Korea

1만m² 범위의 공원이 32개소로 가장 많았고, 타 도시공원에서 변경된 공원은 3만~10만m²의 크기가 17개소로 많은 편이었다 (Figure 2 참조).

규모가 큰 공원을 보면, 면적이 100만m²를 넘는 조성 완료된 역사공원은 4개소¹²⁾로 모두 사적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한 경우다. 10만~100만m² 크기의 공원은 그 중 5개소는 사적으로 역사공원 지정 후에도 별도의 조성계획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른 9개소의 공원은 대부분 사적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이다. 큰 규모의 공원은 주로 지방에 위치하며 연못, 차밭, 토성, 유적 등 넓은 면적의 기존 문화재나 역사자원을 대상¹³⁾으로 조성한 특징을 보인다.

4) 자원의 유형

역사공원의 주제가 되는 역사자원을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유형은 유적(site), 기념물(monument), 건조물(building)의 문화자원과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자연경관(natural landscape)의 경관자원, 장소/사건(place/event), 전통문화(folklore), 인물(historical figure)의 무형자원, 유물(relic)의 동형자원으로 구분하였다. 공원에 따라 단일한 역사자원을 대상으로 조성하기도 했지만 여러 역사자원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 경우 별도로 기록하였다¹⁴⁾ (Table 5 참조).

Table 5. Classification of historical resources of historical parks in Korea

Category	Historical divisions						Ex-clusion	Sum
	Pre-history	An-ient	Go-ryeo	Joseon	Japanese colonial	After the liberation		
Site #	12	20(4)	(2)	21(7)	1			67
Monument #		2(1)	1(1)	1(4)		1		11
Building #		(2)	1(1)	14(7)	1(2)	3(2)		33
Cultural landscape		(1)						1
Natural landscape		(1)	1	1(1)			1	5
Place #/event		2		16(1)	4	13(2)	1	39
Folklore		1		2(2)			1	6
Historical figure		3(1)		7(3)	3(2)	1(1)		21
Relic #				(1)		(1)		2
Exclusion							13	13
Sum	12	38	7	88	13	24	16	196

* The number in the brackets means the park having multiple or multi-era historical resources.

** Historical resources marked with # are mentioned as subjects of historical park in "Guideline on the Detailed Criteria of Urban Parks and Greenbelts Type(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역사자원 중에는 유적을 대상으로 한 공원이 모두 67개소로, 가장 비중이 높다. 주거지, 무덤, 산성, 사직단, 궁터, 제단 등과 같이 문화재 분류에서도 나타나는 자원들이 다수이지만 그 외에도 근대 최초의 상수원 배수지, 수군기지터, 포구 지역, 옛 물길 등 새로운 자원 유형도 나타난다.

다른 자원 유형으로서 장소/사건도 총 39개소로 공원 조성의 주요한 주제가 된다. 순교성지와 같은 종교적 장소나 역사적 사건의 현장, 현충의 장소, 축제터, 문화재 인접 완충지 등이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건조물 대상의 공원은 33개소로, 건조물은 관아, 누정, 서원, 향교와 같은 문화재와 학교, 기차역사, 위인의 생가 등의 비교적 근대의 역사자원으로 구분된다. 인물 관련해서도 21개소의 공원이 지정될 정도로 역사공원 조성 주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위인의 출생지, 본가, 묘역, 유적지, 위인의 업적이 발현된 장소까지 인물의 유·무형 자원을 공원화하는데 사용한다. 기념물로는 11개소가 있고 석탑, 좌상, 교량과 같은 기념물 외에도 보호수, 비석, 바위의 자연 기념물도 역사주제로 활용되어 공원이 조성된다.

그 외 전통문화, 자연경관, 문화경관, 유물의 자원도 일부 나타난다. 전통문화로는 놀이, 제례, 굿, 풍수사상, 전래동화 등이, 자연경관은 조망경관, 산, 연못 등이, 문화경관으로는 차밭이 있다. 유물은 발굴된 유물인 경우, 지역의 대표 박물관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아 역사공원에는 대부분 남아있지 않다.

이들 공원의 자원 중 사적, 보물, 유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록문화재, 천연기념물, 시/도 문화재자료, 시/도 기념물, 향토유적과 같은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88개소로 전체 역사공원의 약 51% 정도에 이른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의 자원이 88개소로 가장 많다. 조선시대의 궁, 사당, 왕릉, 사찰, 서원, 제단, 묘역, 관아, 누정, 성곽, 봉수대, 순교성지, 인물유적, 포구, 전적지(戰跡地) 등이 공원의 대상이 된다. 고대 중 삼국시대의 자원도 많아 유적, 고분, 묘, 산성, 토성, 좌상(坐像), 연못, 관련 지역인물, 옛 국가터(조문국) 등을 대상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이루어진다.

선사시대의 자원으로는 발굴된 주거지 유적, 고인돌, 무덤이 있다. 고려시대는 누각, 산, 좌상, 석탑 등의 7개소로 적은 편이다. 식민지기의 자원으로는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공원, 독립운동장소, 옛 역사(驛舍)를 대상으로 한 공원, 일제 강제 동원의 폐해를 기억하는 공원 등이 계획되었다. 해방 이후 근대기 역사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이 있어 기무부대터, 초전기념비, 현충탑 일대를 공원으로 계획하였고 승일교, 노동당사, 60년대의 농군학교 등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건조물, 매립되기 전 대포항의 모습, 근대 시기의 여러 인물을 대상으로 공원을 계획하기도 한다.

2. 국내 역사공원 조성 경향

1) 역사공원 확충과 자원의 다양화

기존의 도시지역에 역사공원이 확충된 곳들을 살펴보면, 문화재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계획한 곳들이 많다. 민속문화재인 부근당과 일대의 마을숲을 함께 공원으로 조성한 서울 부근당역사공원, 능역이 분리된 서삼릉을 연결하기 위해 주변을 넓은 규모로 역사공원으로 지정한 고양 서삼릉역사공원, 시 기념물인 다운동 고분군과 일대의 차밭을 중심으로 한 울산 다운(茶雲)역사공원, 등록문화재인 철원노동당사 일대의 철원역사공원 등 문화재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전하고자 했다.

현충탑이나 호국용사나 국가유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장소, 옛 선교사들의 순교성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예도 지역별로 많이 나타난다. 현충장소로는 안양 현충공원, 고양 현충역사공원, 사천호국공원, 오산 UN초전기념 평화공원 등이 있고 성지공원으로는 서울 양화진성지공원, 당진 신리성지기념공원, 익산 숲정이성지공원, 여수 순교지공원 등이 있다.

그 외 지방을 중심으로는 장소/사건, 인물, 전통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역사공원 신설이 계획된다. 지역의 인물에 중심을 두고 생가, 본가, 묘역과 사당 일대 등의 물리적 시설을 보전 또는 복원하여 공원화 하였고¹⁵⁾, 지역인물의 업적과 사상을 기념하는 공원이 조성¹⁶⁾되기도 한다. 또한 독립만세운동 장소,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장소, 칠천량해전 장소 등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나 태화루, 고랑포구 등 소멸되었지만 의미 있게 전해져 내려오는 장소를 주제로도 역사공원 지정이 이루어졌다. 전통문화를 대상으로도 역사공원이 지정되는데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이나 도선국사의 풍수사상, 상주 꽃감과 연관되는 「호랑이와 꽃감」 전래동화와 같은 무형의 자원이 있다.

기존 도시지역에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공원을 확장한 경우가 많다. 또한 묘역, 성지, 장소, 사건, 인물, 전통문화 등 기존 도시공원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았던 다양한 유형의 역사자원을 대상으로 공원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국내 역사공원에서 다루는 역사자원은 유·무형유산을 넘어 설화나 동화와 같은 이야기도 포함된다. 이것은 역사공원의 확충과 다양한 성격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역사공원에서 다뤄야 할 역사자원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소위 역사테마파크라 불리는 주제공원이나 도시공원법 내 같은 주제공원인 문화공원과 혼동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도시공원 내 주제공원으로서 역사공원이 다뤄야 하는 역사자원의 종류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리가 필요하다.

2) 개발지역 내 역사공원 신설과 자원 발굴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재개발 등과 같은 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공원 중 역사공원으로 신설·지정한 곳은 42개소에 이른다. 과거에는 주로 발굴된 유적을 대상으로 공원 지정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기존 지역의 문화재나 근대 역사자원, 산이나 옛 물길과 같은 도시 형태적 자원, 무형자원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된 역사자원¹⁷⁾이 역사공원으로 계획된다.

새로운 개발지역에 신설되는 역사공원의 경우, 역사자원으로 무엇을 설정할 것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개발과정에서 발굴된 유적이 있는 경우, 유적과 유물이 공원 조성의 대상이다. 세종의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은 발굴된 원형이 보존유적으로 지정되어 유적 일대를 공원화하고 판교역사공원은 여러 유적을 이전·복원하고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또한 개발 전 기존의 도시에서 의미 있는 역사자원을 선정하여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세종에서는 임금의 친필을 보관하던 어서각, 금강을 조망하는 정자인 독락정, 초려 이유태의 묘역, 고려 말부터 전해지는 은행나무 2수 등 지역적 의견을 수렴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대상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하였다. 하남 미사도 1962년 건립된 가나안농학교를 대상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개발지역에서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상과 장소가 명확하면 역사공원으로 주제를 전개하기에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개발지역에서는 역사공원으로의 위치와 규모를 먼저 결정한 뒤 역사자원을 모색하는 경우도 많다. 광고는 심은선생의 묘소 일대를 공원 장소로 먼저 결정하고, 이후 공원 내 박물관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위례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후 공모를 통해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파주도 공원 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파주 3현으로 불리는 윤관, 이이, 황희를 주제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결국 뚜렷한 자원이 없어 넓은 면적의 공원에 역사성을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특정한 유·무형의 자원이 있는 경우, 역사공원으로서의 의미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성 이후 역사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개발지역에 신설되는 역사공원은 새롭게 역사자원을 발굴해야 하며 공원 조성 결정에 지역공무원이나 지역민보다는 외부전문가들이 많은 참여를 하게 되므로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공원 유형의 변경으로 인한 현상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도시공원법에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분류되던 타 유형의 공원들이 역사공원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근린공원 19개소, 도시자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묘지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기타공원 1개소가 역사공원으로 변경·지정되었다.

공원 유형의 변경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기존 공원의 성격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과 같은 생활권공원이 역사공원으로 변경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존의 근린공원이 역사공원으로 유형 변경되는 경우¹⁸⁾, 역사공원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를 고려한 편익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 근린공원시설도 함께 확충되는 특징을 가진다. 일례로, 흥부만세공원은 공원 조성 초기 단계에는 역사 주제를 표현하는 조각전시장 등의 교양시설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들 시설을 취소하고 풋살장, 게이트볼장과 같은 운동시설을 확충하여 조성하였다¹⁹⁾. 봉은역사공원도 역사공원 계획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과 같은 운동공간을 대거 확보하였다²⁰⁾. 서로 다른 공원의 기능이 한 공간에서 상충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린이공원이 역사공원으로 변경된 경우는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완전히 버리고 역사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이 많다²¹⁾. 또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역사공원으로 변경될 때는 공원시설이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역사공원이 기존의 생활권공원 체계에 영향을 주면서 상호간에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권공원이 역사공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역사공원과 무관하게 지역 차원의 생활권공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역사공원으로 변경되면서 미치게 될 영향은 없는지, 지역 일대의 도시공원 체계와 계획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도시자연공원의 유형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법 개정 전 인정되던 도시공원의 한 종류로, 자연경관지의 보호가 최우선되던 공원이다. 과거 도시자연공원은 규모가 10만²m² 이상이었던 넓은 면적의 공원이었고, 건폐율 제한도 면적에 따라 4~10% 이하²²⁾로 적용되던 공원이었다. 이들 공원은 전체가 역사공원으로 변경되기도 하고²³⁾,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에서 폐지하고 그 안의 일부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신설²⁴⁾하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 역사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공원시설부지면적에서 자유로워지고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게 된다. 도시자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정비조성계획을 수립한 공원을 보면, 행주산성은 역사자료관, 한강자료관 등 교양시설을, 진주 남강선사유적공원은 박물관 건립과 유적복원시설을, 인천 전등역사공원은 기록문화유산 박물관, 국제명상센터, 전통수행체험센터, 한옥체험관을 조성하는 등 공원 내 여러 시설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다. 도시자연공원이 역사공원으로 변경될 때 도시녹지 보전에 반대되지 않도록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역사공원 운영 방향 고찰

1) 역사공원의 유형별 관리

기 조성된 89개소의 역사공원을 분석한 결과, 역사자원의 성

격도 다양하고 문화재로의 지정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공원 조성과정과 조성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논점도 있었다. 이에, 국내의 역사공원을 2장에서 제시한 공원 유형에 맞게 분류하고 유형별 조성 방향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Table 6 참조).

역사유산공원(heritage park)은 공원의 역사자원이 유형유산의 속성을 가진 경우로, 역사자원은 다시 보전자원과 복원자원으로 나뉜다. 보전자원은 자원의 보전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며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의 관리 대상이 된다. 대전 계족산성, 세종 백제고분, 시흥 오이도 선사

유적, 홍성 홍주성과 같은 유적과 영천 임고서원, 제주 관덕정, 여수 손양원목사 유적 중 성신교회 등 건조물, 그 외 바위, 석탑, 좌상 등 기념물을 대상으로 역사공원이 조성되었다. 역사유산공원은 공원 조성에서 역사자원의 보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과 협업이 절대적이며, 공원의 조성부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방향은 관련 기관의 상호 협조하에 자원의 보전에 충실한 방향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보전자원 중 문화경관에 해당하는 자원은 현재까지는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어 누가 담당할 것인지 지정할 필요가 있다.

Table 6. Classification of historical park by historical resources

Categories	Resource management	N	Historical resources		Manage of CHA	Planning strategies	Management strategies	
Historical park	Heritage park	Conservation	33	Site	graveyard, prehistoric remains, dolmen, pond, mountain fortress, earthen fortifications, ancient tombs, port	○	Planning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heritage	Management connected with cha
				Building	church, confucian academy(書院), arbor(樓亭), government office(官衙), shrine(神堂), royal building(殿閣)	○		
				Monument	rock, stone pagoda(石塔), seated statue(坐像)	○		
				Cultural landscape	green tea field	×	Planning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heritage	Demand for management authority
	Reconstruction or restoration	6(3)	Site	altar, bell building(鐘樓), beacon fire station(烽燧臺), guest house(客舍), port	△ (3 parks)	Intervention in planning phase to restore similar to original form	Demand for management authority of restored facilities	
			Building	confucian academy(書院)	×			
			Historical figure	main house(本家), birthplace, family home	△ (1 park)			
	Memorial park	Commemoration	31(3)	Historical figure	related village, regional main historical figure, fighter for independence, pastor, mother of figure	△ (4 parks)	Arrangement for planning and design which emphasize memorialization and educational function	Demand for management authority to develop the cultural content sustainedly
				Place/event	martyrs' site, battlefield, genocide place, independence movement site, well-known site, previous land before reclaiming, memorial facilities, cemetery, tablet facilities	△ (1 park)		
	Historical theme park	Re-creation	15	Historical figure	regional main historical figure	×	Arrangement for planning and design to re-create as theme park of historical resources	Demand for management authority to develop the cultural content sustainedly
Place				arbor(樓亭), folk game site, port, buffer site of heritage	×			
Folklore				fairytale	×			
Historic park	Conservation	1	Monument	historic park constructed in 1925	○	Arrangement for conservation planning of historic park itself and monuments inside the park	Demand for management authority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park	

* The number in bracket means the park relevant to both classifications.

** The number of parks was compiled as a criterion of data in December, 2014.

*** CHA is the abbreviation f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Korea.

**** ○: CHA manage heritages of all parks: the park includes important official heritages.

△: CHA manage heritages of some parks: the park could have official heritages. However, most of them are reconstructed or revived as a new one.

() means the number of parks which have heritages controlled by CHA.

×: CHA doesn't control any historical contents in parks: there is no heritage.

복원자원은 발굴조사나 사료연구를 통해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공원 조성에서 원형 고증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해당 역사공원의 자원을 보면, 주로 서울 선농단이나 영암 상대포구, 여수 봉수대, 수원 화성 내 종루 등과 같은 유적 내 시설과 양주 조소양 선생 본가, 담양 고광순 의병장 생가 등 유명 인물의 주거지가 복원되었다. 이들은 일부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만 문화재가 아닌 경우 관리 주체가 모호하여 공원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시흥 능곡선사유적공원에서는 복원한 움집을 관리상 문제로 폐쇄한 바 있다. 따라서 복원자원의 경우,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각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해당 자원의 보전에 중점을 둔 공원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기념공원(memorial park)은 장소의 역사성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양산의 신라시대 박제상 유적, 광양 매천사당, 함양 문태서 의병장 생가, 남원 김주열 열사 묘역 등 지역별로 다양한 시대적 인물의 흔적을 대상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서울 서소문 순교성지, 오산 UN군의 초전지, 홍천 동학혁명군 최후전적지, 영동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장소, 울진 독립만세운동 장소였던 흥부장터 등 장소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공원도 조성되었다. 조사 결과, 역사기념공원은 일부 공원에서도 문화재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물이나 장소, 사건에서 역사성을 기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역사를 증명하기 보다는 '기념'의 방식을 통해 역사성을 구현할 수 있다. 역사기념공원은 공원 기능에서 기념과 교육이 중요하며, 이는 콘텐츠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지속적인 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요구된다.

역사테마공원(historical theme park)은 과거의 역사적 장소나 인물, 이야기를 활용을 목적으로 재창조하는데, 안동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원이엄마의 편지글을 주제로 한 공원, 임진왜란 때 소멸된 울산의 태화루를 복원한 공원, 전래동화를 주제로 한 상주 꽃감공원, 임진강 옛 모습을 재현한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등이 있었다. 복원형 공원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원형의 증거나 복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운용이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활용을 강조할 수 있기에 설계적 상상력이 많은 부분 발휘될 수 있다. 역사테마공원은 공원 조성시 조경가, 건축가 등의 창의적 재해석이 보다 중요하며, 이는 타 유형의 역사공원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원 운영·관리에 있어 콘텐츠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반영되어야 한다.

역사적공원(historic park)은 공원 자체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경우를 일컫는다. 따라서 공원을 재조

성할 때 공원 자체를 역사적으로 파악해 보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공원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역사적공원은 공원 내 역사자원들은 문화재청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원 전체를 보전의 시각으로 관리할 주체는 없어 어떻게 조직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문화재와 공원 관리의 협조체계 구축

역사공원 중 공원 내 역사자원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88개소이다. 도시공원법에서는 면적인 문화재 유형에 대해서만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도시공원법 제48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은 이들 지역에 대한 점용 및 사용 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정 시기에 있어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문화재와 공원의 조성관리는 이원화되어 있다.

공원 내 문화재의 성격은 공원과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화재와 공원의 규모가 같은 경우로, 주로 사적이나 명승이 중복 지정되고 있다. 이들은 공원 관련 부서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조성계획이 아닌 문화재 보전 차원의 정비계획이 수립된다. 이 경우 유산의 보전이 최우선되어야 하기에 도시공원 지정으로 얻는 이점은 부족해 보인다.

둘째, 국보, 보물, 사적, 기념물, 등록문화재 등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 범위와 연관해 역사공원이 지정된 경우이다. 셋째, 문화재보호구역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문화재 일대에 문화재보다 넓은 영역으로 역사공원이 지정된 곳이다. 둘 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완충지역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기에 유산의 보호와 공원으로의 활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 경우 공원 내 문화재는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공원 전체는 공원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므로, 여기서는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공원조성계획의 세부 사항이 문화재 보전과 배치되지 않는지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문화재가 공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있는 역사공원 정도로 공원이 인식되어왔다. 역사공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문화재의 특성이 공원 조성에 반영되고, 설치한 교양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원조성결정에 관한 논의 시점에서부터 역사공원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별도의 운영계획이 요구된다.

3) 역사적공원의 보전가치에 대한 재조명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공원에는 역사자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공원과 정원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들어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문화재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원과 같은 도시 근대유산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근대 공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원은 이를 유산 그 자체로 보고 보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내용 가운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원은 1925년에 지정된 안성 낙원역사공원, 1935년에 지정된 전주 중앙공원, 1943년에 지정된 광주 사직공원, 광주공원(광주시 1호 공원)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천의 자유공원이나 종로 탑골공원은 현재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공원이다. 마로니에 공원이나 올림픽공원도 공원사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역사적공원의 보전 사례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공원 내 기념물은 문화재청 관할 하에 보전되지만 공원 자체를 역사자원으로 다루지는 않는다²⁵⁾. 국내에 근대 도시 시설로서 공원이 정착한지 100년이 지난 만큼, 앞으로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역사적공원을 발굴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행 역사공원은 주제가 역사인 공원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공원(historical park) 그 자체를 역사적인 공원(historic park)으로 인지하는 해외의 경우와도 개념적 차이를 보이므로 상기한 역사적공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IV. 결론

도시개발에서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되었던 역사자원은 이제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 요소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도시공원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제공원으로서 역사공원은 도시 환경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도시공원의 다양성 측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심 내 유산을 보전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시설 확충으로 지역 정체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역사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역사공원의 개념과 유형 고찰, 국내 역사공원의 현황 조사와 조성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역사공원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제도법상에 역사공원이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역사공원은 크게 증가하였고 도심 내 역사자원은 공원을 통해 보호되고 활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의 역사자원을 발굴하는 일을 건인하였다.

둘째, 역사자원은 주로 조선시대 유적에 집중되어 있지만 인물, 사건, 장소 등의 유산도 포함되며 근대기 유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 역사공원의 지정에 있어 지역별로 몇 가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기존 도시는 다양한 역사자원을 이용한 공원 확충에 집중하는 반면, 신도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이상적인 역사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각각은 자원의 보전, 관광과 교육, 휴식과 여가의 측면이 상충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생활권 공원의 성격과 혼용되는 문제도 있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역사공원을 유형 분류하였다. 역사공원은 역사자원의 속성에 따라 역사유산공원, 역사기념공원, 역사테마공원으로 구분하고 공원 자체의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한 역사적공원을 별도로 분류한 다음, 국내 역사공원을 유형별로 재편하였다. 공원의 관리와 조성 방향을 각 유형별로 설정하고 역사공원의 정체성을 위한 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역사공원 외에도 도심 내 보전 가능한 유산으로서 공원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현재는 역사적공원과 도시공원 내 역사공원이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근대 도시유산으로서 공원의 가치를 조명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역사적공원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지난 10년간, 제도로서 운영된 역사공원은 도심 내 다양한 역사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이는 국내 도시공원을 다양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역사공원의 활용 특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역사공원이 더욱 활성화 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보다 세분화된 공원 유형과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역사공원의 지정과 조성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역사공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역사공원을 지정, 조성, 운영의 관점에서 고찰했기 때문에 이용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주 1. 이상의 수치는 도시공원 결정면적을 기준한 것이다. KOSIS 국가통계포털 2005년~2014년 도시계획현황: 공원(1) 참조.

주 2. 현재 역사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약 1.8%에 해당한다. 2013년 5월 22일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주제공원에 도시농업공원이 추가되었으나 2014년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아 생략하였다.

주 3. 도시공원법 제15조.

주 4. 문화재 보존 원칙에 대한 내용은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11)을 참조하였다.

주 5. 통계청(KOSIS)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지정된 역사공원은 모두 169개소이다. 여기에 누락된 서울 방이동 고분과 백제 초기 적석총, 서소문 역사공원, 오산 삼미호 역사공원, 용인 역사공원, 파주 운정3지구 역사공원 1, 2의 7개소를 추가하고 최근 도시공원 지정이 취소된 광명 보급자리 1 역사공원, 통영 문화공원, 통영역사공원 3개소는 제외하였다. 또한 홍성 흥복면 2호 역사공원과 예산 신도시 22 역사공원은 하나의 공원이 지적경계선상 분리된 경우로, 최근 지적선이 정리되면서 예산에 속한 애향공원으로 변경되어 정리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모두 172개소로 파악되었다.

주 6. 예를 들어, 영국은 각 부처가 해당 업무를 분할하는 것이 아닌 법체계

내에서 보전 대상에 대하여 협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공원 관리와 유산 보전의 업무가 분업화 되어있다.

- 주 7. 미국의 국립공원은 다음의 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자원의 특정 유형에 대한 탁월한 사례일 것, 둘째, 국가 유산에 있는 자연, 문화의 주제를 해석하거나 표현함에 있어 뛰어난 가치와 품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 셋째, 레크리에이션, 공공의 사용과 즐거움, 또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넷째, 자원이 진실하고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때 묻지 않은 예로서 높은 수준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Park_Service#Criteria).
- 주 8. 역사공원과 사적지에 대한 내용은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Historic_Site_\(United_States\)](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Historic_Site_(United_States))를 참조하였다.
- 주 9. 2006년에 112개 공원이, 2007년에 138개의 공원이 선별되어 「역사공원 100선」에는 모두 250개소의 공원이 들어있다. 2006년 11월 4일자 『Hakodateshinbun(函館新聞)』에는 “고료카쿠(五稜郭)공원, 하코다테(函館)공원, 「역사공원 100선」에 선정, 하코다테시 관광 진흥에 기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 주 10. Ahn(2001)은 조경학 도입 이래로 사적지조경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해 오다 점차 역사공원 용어를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 주 11. 영어에서 historic은 아주 중요하여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통 historical 보다 높은 수준의 중요성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이에 English Heritage에서는 역사적인 공원을 Historic park으로 구분하며, 그 외 역사성을 가진 유산을 포함하는 공원의 경우는 Historical Park으로 구분한다(Pendlebury, 1996).
- 주 12. 포천 청성역사공원(1,060,350m², 반월성지), 고양 서삼릉(1,213,810m², 조선왕릉), 남양주 홍유릉(1,233,657m², 조선왕릉), 전주 산성공원(1,630,490m², 남고산성)이 해당한다.
- 주 13. 울산 다운(茶雲) 역사공원(185,100m², 고분군과 차밭), 청주 정북토성 역사공원(197,946m², 삼국시대 토성),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262,774m², 지역 인물), 부여 서동공원(498,077m², 궁남지), 광양 마로공원(699,080m², 백제 마로산성), 영동 노근리평화공원(132,240m², 노근리 사건 현장), 시흥 오이도 역사공원(335,121m², 선사유적)이 있다.
- 주 14. Table 5에서 복수의 역사자원을 대상으로 조성한 역사공원과 여러 시기에 걸친 역사자원을 담고 있는 역사공원의 수는 괄호 안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복수의 자원과 여러 시기의 자원을 주제로 한 역사공원의 수는 24개소이다.
- 주 15. 양주 조소양선생기념공원(의병 조소양 본가), 담양 유천공원(의병장 고광순의 생가), 광양 매천역사공원(매천 황현의 묘역과 사당) 등이 있다.
- 주 16. 경산 삼성현역사문화공원(원효, 설총, 일연의 업적과 사상을 기념)이 조성되었다.
- 주 17. 군산 역사공원(기차역사), 하남 미사지구역사공원(가나안 농군학교), 세종 구울달역사공원(산)이나 서울 찬우물길(옛 물길), 용인 역사공원(길마재 줄다리기) 등 다양한 역사자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공원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주 18. 사적이지만 도시공원법에서는 근린공원으로 분류되던 서울 동묘공원, 서울 방이동 고분 역사공원, 서울 경희궁 시공원, 대전 선사유적공원 등은 유형만 역사공원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물리적인 변화는 없었다. 새롭게 조성된 공원으로는 서울 신계역사공원, 서울 서소문역사공원, 서울 봉은역사공원, 부산 당곡역사공원, 울산 흥부만세공원, 진주 강이식장군 역사공원 등이 있다.
- 주 19. 울진군고시 제2014-90호 울진 군관리계획(흥부만세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일 2014-08-06
- 주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8호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일 2015-10-01
- 주 21. 서울 선농단역사공원(선농단과 향나무), 함양 화산공원(화산서원), 대전 우암사적공원(우암 송시열 유적), 안성 낙원역사공원(역사적공원과 공원 내 기념물)이다.
- 주 22. 도시공원법 개정 전 도시자연공원은 면적이 30만m² 미만의 공원은 건폐율 10% 이하, 30만m² 이상~50만m² 미만의 공원은 건폐율 8%

이하, 50만m² 이상의 공원은 건폐율 4% 이하로 제한되어 왔다.

- 주 23. 고양 행주산성역사공원, 오산 독산성공원, 밀양 추화산공원, 남양주 홍유릉역사공원, 진주 진주성공원, 시흥 오이도역사공원, 전주 (남고)산성공원, 광양 마로(산성)공원, 인천 전등역사공원이 있다.
- 주 24. 대전 보문산성역사공원, 대전 계족산성역사공원, 진주 남강선사유적공원, 인천 북산역사공원이 있다.
- 주 25. 안성 낙원역사공원의 경우, 1925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의 보전 가치가 높았다. 하지만 현황은 공원 내에 있는 좌상과 석탑, 비석 등의 기념물만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 공원 자체를 보전하는 관리주체는 없었다.

References

- Ahn, G. B.(2001) A study on th conception of historic park and its typ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9(36): 1-14.
- Commission of Urban Park in Japan(2005) Urban Park in Japan(日本の都市公園). Tokyo: Environmental Greening Newspaper.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11) A Research for Legislating Preservation Principle of Cultural Heritage(1): Groundwork(문화유산 보존 원칙 제정을 위한 연구(1) 기반조성연구).
- Hakodateshinbun(函館新聞) on November 4, 2006.
- Hong, S. K., M. W. Lee, S. M. Lee and M. J. Ahn(2007) Searching for facilities and service programs for the establishment of urban park ident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5(5): 29-36.
- Kim, N. O.(1988) A study on the use and preservation of American historic landscape - Mesaverde National Park,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6(1): 15-34.
- Kim, W. J., K. Y. Kang, H. B. Kim, Y. A. Seo and S. J. Park(2015) "Bringing colour to history": Revitalization of Historical Parks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 Ko, Y. K. and H. S. So(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current status historical park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4(1): 107-117.
- Lee, J. J., M. H. Park, M. H. Park, D. G. Lee and Y. S. Jang(2004) Plan for urban park and green space system and management, Urban Information Service 273: 3-12.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2006) Operational Guidelines for Urban Plan.
- National Park System(2009) The National Parks: Index 2009 - 2011.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National Park Service.
- Pendlebury, J.(1996) Historic Parks and Gardens and Statutory Protection, Electronic Working Paper 12, Global Urban Research Unit,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 Act on Urban Parks, Greenbelts, etc.(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Urban Parks, Greenbelts, etc.(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
-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Urban Parks, Greenbelts, etc.(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
- Guideline on the Detailed Criteria of Urban Parks and Greenbelts Type(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 www.en.wikipedia.org/ / Accessed in 2016. 4.

Received : 14 April, 2016

Revised : 27 April, 2016 (1st)

29 April, 2016 (2nd)

Accepted : 29 April, 2016

3인인명 심사필